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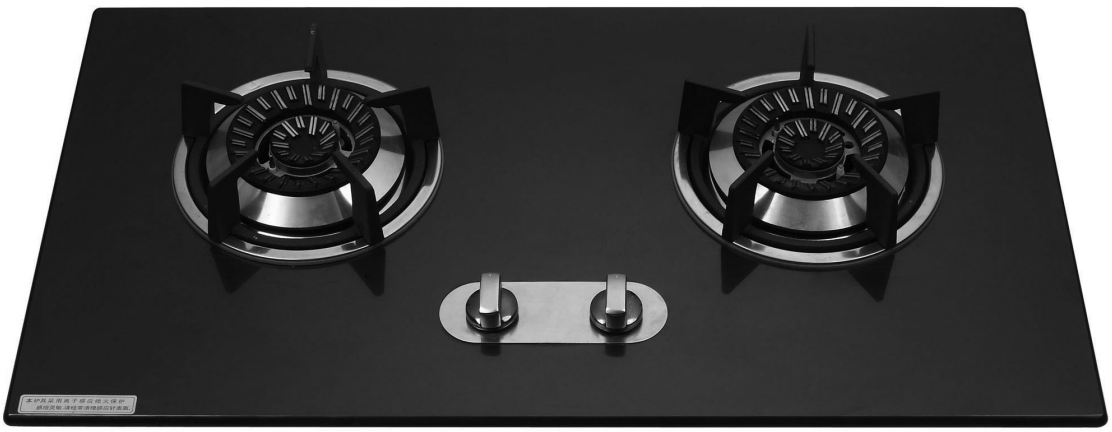

주방가구에 함께 설치되는 빌트인 연소기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주방의 편의성 및 미관을 위해 빌트인 연소기(주방가구 안에 일체로 설치된 연소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빌트인 구조로 연소기를 설치할 경우 연소기와 호스의 접속부분은 은폐구조로 되어있어 일상점검이 불가능함에 따라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연결부분 점검기준을 KGS코드로 제정 · 시행하고 있으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 뚫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빌트인 연소기 내부 가스 체류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을 보급하고 있다[편집자주]

1. 빌트인 연소기 설치 기준(KGS FU 551, 2.4.4.5.3, 2.4.4.5.4)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2.4.4.5.3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호스는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하고 열로 인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점검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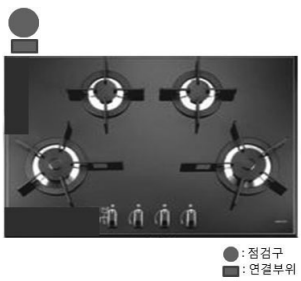	연소기와 호스의 연결부위의 점검이 가능토록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점검구 (호스 단면적 이상의 크기) 타공

가스누출 확인장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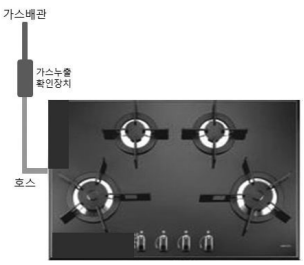	다음 아래의 가스누출확인장치를 중간밸브(퓨즈콕) 설치위치에 설치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2)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3)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2. 설치 사례

현장사진	가스누출 확인 점검구 현황	인정 여부
	빌트인연소기 하부장 여닫이문을 열어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검지 가능	인정
	배기그릴 제거 후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검지 가능	인정
	배기그릴이 뚫려있어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검지 가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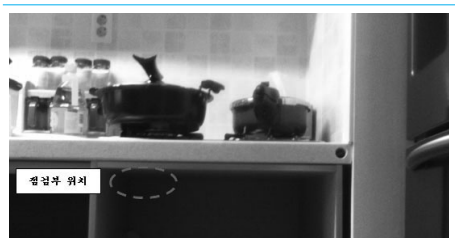	점검구를 빌트인연소기 상판이 아닌 개방된 하부장에 시공하여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점검 가능	인정
	하부장을 도구없이 빼내면 육안점검 및 누출점검 가능	인정
	하부서랍장을 도구(드리아버 등)를 이용하여 빼내거나 분리해야만 육안점검 및 누출점검 가능	불인정

현장사진	가스누출 확인 점검구 현황	인정 여부
	상판이 분리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상판을 인위적으로 들어야만 가스점검 가능	불인정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함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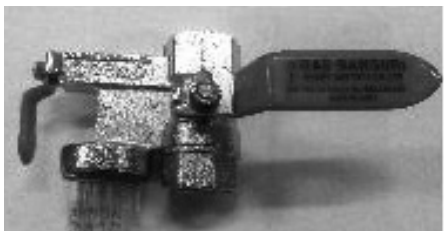	가스누출확인 배관용 밸브 – 특정상세기준인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	인정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 특정상세기준인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	인정
빌트인연소기는 2011년 8월 26일 이전에 설치되었지만 준공검사가 2011년 8월 26일 이후인 경우		2011년 8월 26일 이전에 빌트인 연소기가 설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사진제출, 설치확인서 등등)이 있는 경우 인정 ※ 빌트인연소기설치기준 적용시기 : 2011. 8. 26
기존 빌트인연소기 사용 중에 2011년 8월 26일 이후 씽크대 교체 없이 가스렌지만 교체할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점검구 또는 가스누출확인장치를 설치 해야함
소방법령에 따라 주방 천정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기(자동화식 소화기)를 가스누출확인장치로 인정여부?		불인정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의 경우 가스누출확인장치로 인정여부 ?		불인정